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의안 번호	6312
----------	------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의장

주 문

헌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을 선출한다.

제안이유

헌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껀원됨에 따라 후임 재판관 선출을 위한 것임.

선출대상자

- 성명 : 마은혁(馬恩赫)
- 생년월일 : 1963년 9월 7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xxx, xxxx동 xxx호
(중앙동, xxxxx)

※ 붙임

- 추천사유서 1부.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1부.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추천사유서

1. 추천 교섭단체 : 더불어민주당

2. 공직후보자

성명 : 마 은 혁(馬 恩 赫)

생년월일 : 1963. 9. 7.

3. 추천사유

- 상기 추천 대상자는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다음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음.
- 상기 추천 대상자는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노동법커뮤니티)와 대법원의 노동법실무연구회에서 노동법 이론 및 실무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성과를 다음의 노동법 주석서에 집약하여 발표하였음.
 - 근로기준법주해[초판(2010), 제2판(2020)] III(박영사) 중 ‘취업규칙’ 부분(근로기준법 제93조~제97조) 집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주해[초판(2015), 제2판(2023)] II(박영사) 중 ‘단체협약’ 부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6조) 집필.

- 상기 추천 대상자의 위와 같은 이론적 활동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주된 규범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의 주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 원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에 관한 판례 법리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상기 추천 대상자는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노동법커뮤니티)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법관들의 노동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적 지침서인 노동재판 실무편람 편집위원회 대표를 맡아 다른 법관들과 함께 [노동재판실무편람 2022]를 발간하였으며,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의 주해서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겸 간사로서 근로기준법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주해의 저술, 출판 활동을 총괄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음.
- 상기 추천 대상자는 서울고등법원의 노동전담부 배석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노동사건을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연구 성과 등을, 해고와 관련된 사건, 통상임금 등 임금과 관련된 사건,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시간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등 다양한 노동사건에 적용함으로써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한 취지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하는 판결을 해왔음.
- 또한 상기 추천 대상자는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노력하여 왔음. 상기 추천 대상자는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으로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 대법원 판결들이 파기되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데 밑거름이 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상기 추천 대상자는 조선족 동포가 밀집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그 지역이 조선족 동포에 의해 장악되고 조선족 동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표현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족 동포들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화제작사에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에 대해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영화 제작 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수용되어 확정됨으로써 조선족 동포 등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음. 또한 개인 사업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음.
- 상기 추천 대상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해왔음.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기 추천 대상자를 국가 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게 하는 헌법재판을 수행할 책임자로 판단하여 선출을 요청함.

직업 · 학력 · 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재 직 증 명 서

○ 졸 업 증 명 서

○ 합 격 증 명 서

○ 경 력 증 명 서

이 력 서

성 명 : 마 은 혁(馬 恩 赫)

생년월일 : 1963년 9월 7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xxx, xxxxx동 xxx호 (중앙동, xxxxx)

직 업

2000. 2. ~ 현재 공무원 [법관]

학 력

1978. 3. ~ 1981. 2.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1981. 3. ~ 1988. 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경 력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 2. ~ 2002. 2.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 2. ~ 2003. 2.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3. 2. ~ 2006. 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6. 2. ~ 2008.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 8. ~ 2008. 2. 미국 밴더빌트대학 교육파견

2008. 2. ~ 2010.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0. 2. ~ 2012. 2.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2. 2. ~ 2014. 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4. 2. ~ 2015.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5. 2. ~ 2017. 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2. ~ 2019. 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2. ~ 2022.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 2. ~ 2024. 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 2. ~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병역

1984. 5. ~ 1986. 11. 육군 병장 (만기)

상훈

해당사항 없음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병적증명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 공직후보자 최초재산신고서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체납)증명서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조회 회보